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9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재관・박정현

이건태 • 윤종군 • 김태년

김유덕 • 강준현 • 이연희

장종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 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, 이에 대한 개선책 마 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(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방호 및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안검색대 등 출입관리에 필요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보호관찰소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보호관찰소의 설치) ① •	제14조(보호관찰소의 설치) ① 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
	방호 및 보호관찰활동과 갱생
	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
	보안검색대 등 출입관리에 필
	요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
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흉기나
	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보
	호관찰소 내의 질서유지에 방
	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
	확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검
	<u>색할 수 있다.</u>